

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(제55조제1항제5호 관련)

1. 선체에 관한 준비
 - 가.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(해당 어선에 한정한다)
 - 나. 수밀문·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
2. 기관에 관한 준비
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3.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
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4.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
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5.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
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
6. 해상 시운전의 준비
7.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(효력시험만 해당한다), 제3호 및 제5호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.